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안전점검 대상인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포함 등〉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5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전 전기안전점검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포함	2
2.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사전 전기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개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전기재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법률로 상향하되,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사전 전기안전점검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포함

개정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사전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 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9. (생 략) ② ~ ④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조의2에 따른 <u>전기자동차 충전시설</u>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¹⁾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증가²⁾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화재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전 안전점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설비의 특징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³⁾⁴⁾하여 이에 대한 개별적인 점검 규정을 두고 있음.

1)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은 '24년 7월 기준 약 55만대에서 '30년 약 420만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19년 48,411기에서 '23년 312,308기로 5년 동안 약 645% 증가하였음.

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표] 전기설비 사전 점검에 대한 현행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④ 법 제13조제1항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4)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서 사업에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해당 사항이 없음.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로 한정한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면 현행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고,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면 현행 법률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이하 "사용전검사")를 받고 사용⁵⁾해야 함.

그런데, 공사에 따르면 사용전점검이나 사용전검사는 배전단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인입구 배선부터 배·분전반, 차단기, 옥내·외 배선, 콘센트 등의 전기설비까지만 점검·검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전기설비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충전기, 기계기구류, 방호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사용전점검·검사의 대상이 아님.

자가용전기설비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현행 법률 제13조제1항⁶⁾ 및 현행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제12호에 따라 시설의 운영 전에 미

5) 또한,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월 1회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함.

6)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 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

리 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이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자체에 대한 사전 점검이 가능하나,

일반용전기설비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가
시설 운영 전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공사가 명시적인 규정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전
점검 시 설비까지 점검하고 있는 상황임.

[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전 전기안전점검 제도 현황

구 분	근 거 조 항		내 용
자가용(75kW이상)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사용전검사
		제13조	전기안전점검
일반용(75kW미만)		제12조	사용전점검

이에, 개정안은 현재 자가용전기설비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뿐만 아
니라 일반용전기설비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다중이용시설로서 공
사의 사전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제도화하면서 그 근거를 대통령령
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일반용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보다 상대적으로 용량이 낮아 사고의 발생의 위험이나 피해의 정도가 작을 수는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예방이 어렵고 사후 피해도 막대한 경향이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가 전기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사용승인·허가 등 전에 점검을 실시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일반용전기설비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다중이용시설로 포함하여 공백없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사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현행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다중이용 시설로 규정하면 개정안과 동일한 입법 취지와 행정적 목적을 보다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어 입법효율적 관점에서 적절하다는 입장임.

2.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사전 전기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1항제1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10. (생략) ②·③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u>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3조제1항7)은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업시설, 어린이

7)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집,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증축·개축하려는 경우 시설의 운영 전에 미리 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1~2023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현황

연도	실시건수(건)
2021년	21,949
2022년	40,248
2023년	43,769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다중이용시설은 유동인구가 많고 시설 내 사람의 밀집도가 높아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설 운영 전에 미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⁸⁾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보존

-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8) 「전기안전관리법」
-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한 현상변경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한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¹⁰⁾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이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자연유산이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훼손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점검 의무를 규정한 제13조를 위반하더라도 형벌, 과태료, 행정처분 등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임.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3. (생략)

1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5. (생략)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점검 의무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동일한 취지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06187)이 2025.4.23.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는 중이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8